

제 24-AV4BI-0013 호



안 전 인 증 서

산일센서주식회사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81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및 시행규칙 제110조(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) 제4항(인증서 교부)에 따른 안전 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산업용로봇 방호장치(광전자식)

형식·모델 / 용량·등급 / 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SSR-XXX02XX(산업용 로봇)

※ 뒤쪽 참조

인증번호

24-AV2BI-0013

용량·등급

R-2

정 격

24V DC

인 증 기 준

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(노동부고시 제2021-22호)

인 증 조 건

뒤쪽 참조

- 2024.11.19. 인증서 오기 정정

2024년 11월 19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



(뒤 쪽)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

산일센서주식회사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81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본 기기는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로서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해당함.

3. 인증범위

형식명 : SSR-XXX^{주1)}02XX^{주2)} (산업용 로봇)

주1) 광축수 (12 ~ 120, 4광축씩 증가함)

2) 뮤팅램프 (빈칸: Fundamental Form, U: Muting lamp separate type, UI: Muting lamp Integral type)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: 해당 없음

5. 인증(변경)사항 : 해당 없음

6. 그 밖의 사항

—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는 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